

글로벌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글로벌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하나 글로벌페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的 신청에 따라 “은행”이 지정한 채널을 통해 “제휴사” 내 등록된 “수취인”的 해외 계정에 외국 통화로 송금하여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제휴사”라 함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행”과 제휴한 글로벌 결제업체인 페이팔 (PayPal)을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본 “서비스”에 의하여 송금액이 충전되는, “제휴사”에 등록된 계정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기기, 전자적 장치 및 공간 등을 말합니다.
 6. “지정거래”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전신환 매도율”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외국환을 매도시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을 말합니다.
 8. “전신환 매입율”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시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은행”的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제공 “서비스”的 이용

- ① “서비스” 신청에 따라, “은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외국 통화에 해당하는 원화 상당액을 “이용자”的 계좌 등으로부터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제휴사” 내 “수취인” 계정에 해당 외화 통화를 충전하는 형태로만 송금합니다.
-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용자”的 “서비스” 요청에 따라 “제휴사”에 동 금액을 실시간 전문으로 전달하고, “제휴사”는 전달된 금액을 “제휴사”내 “수취인” 계정잔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수행됩니다.
- ③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출금계좌는 “은행” 내 사전 등록된 “이용자” 본인 명의의 원화 요구불계좌로 하며, “은행”은 필요시 결제수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외국환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거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은행”을 통해 해당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정거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이용가능 통화 및 제공 채널

-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해외 통화는 미국 달러화로 하며, 필요시 “은행”이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서비스”는 “은행”이 정한 채널을 통하여 수행되며, “은행”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채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한도

- ①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1회 이용한도는 미화 1천불, 연간 이용한도는 미화 1만불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라 연간 한도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한도 내에서 본 “서비스”的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적용 환율

- ① 본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환 환율은 출금시점에서의 “은행” 고시 “전신환 매도율”로 합니다. 단, “서비스” 신청에 따른 “은행”的 거래처리 시점이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로 고시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 ② “서비스” 완료 후 “수취인”的 송금액 수취거절 등 “은행”的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송금액이 반환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계좌입금 시점에서의 은행 고시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송금액이 반환되는 시점이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로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서비스의 이용 정지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的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서비스” 이용정지 처리 후 동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 작성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e-mail)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1. 이용자정보 사항을 여위로 기재한 경우
2. 송금의 목적이 분산송금, 부정사용 등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도박, 음란물, 불법 약품, 총포류, 다단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제 8조 서비스 수수료

-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구합니다.
- ② “은행”은 해당 “서비스” 처리 전 “은행” 수수료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은행”은 “서비스” 실행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송금액과 합산하여 “이용자”的 출금계좌에서 차감하기로 합니다.
- ④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的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的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따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제한,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및 “제휴사”的 전산 마감, 상호 정산,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2. “은행” 및 “제휴사”的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7. “제휴사” 요청에 의한 경우
- ② “은행”은 상기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하는 즉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의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번호로 통지합니다.

제 11조 “서비스”的 취소 및 대금 반환

- ① “이용자”的 요청에 따라 “은행”이 처리한 “서비스”的 취소는 불가하다. 단, “은행”的 오류로 인한 중복 송금 등의 경우에는 “은행”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취소 처리합니다.
-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취소시 “은행”은 당초 오류 처리된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이용자”的 요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휴사에 반환을 요청하여 “은행”이 “제휴사”로부터 반환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앞 반환 시, 당초 “은행”이 징구한 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휴사”的 당행 앞 반환처리 과정에서 “제휴사”的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서비스”的 종료

“은행”은 관계 법령 및 감독기관의 관련 규정 변경, 지시 등 영업환경의 변화나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이의 신청

- ① “서비스” 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내용, 처리결과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 14조 은행의 책임 및 면책

- ① “은행”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的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을 보상합니다.
-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수취인”的 식별정보(e-mail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를 오류 지정 또는 “수취인”的 수취거절로 송금액이 반환되어 발생하는 손해
 2. 은행이 “서비스”를 이행한 후, “제휴사” 또는 “수취인”的 후속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법률적 분쟁에 대한 손해
 3. “은행”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5조 약관의 개정 및 효력

- ① “은행”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의 적용 및 주요 기능의 삭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은행”的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的 접근이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를 통하여 1개월 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이를 즉시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준용규정 및 관계법령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的 해석에 관하여는 “은행”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